

영등포구의회
제21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10. 22

行政委員會
專門委員 崔光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3호로 2018년 10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구민과의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한 영등포구 구민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인권정책에 대한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의 2)

4.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구민인권지킴이단 구성을 통해 구민참여 활성화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장과 수

준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의2 제1항에서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등포구 구민인권지킴이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2항에서 인권침해·보호 등의 모니터링 등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 제3항에서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제4항에서 인권지킴이단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제5항에서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음.

○ 검토 결과, 주민의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역 내 인권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과,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인권 차별 사례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구에 인권 정책을 제안하는 등,

주민 참여 속에 인권의 가치가 보다 존중받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 구민인권지킴이단 설치·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